

주정부의 의료 및 장기요양치료 재산 회수

Estate Recovery Repaying the State for Medical and Long-Term Services and Supports

재산 회수란 무엇입니까?

- 주 법률(chapters RCW 41.05A 및 43.20B)에 따라 일부 의료 및 장기요양치료지원(LTSS)에 해당하는 귀하의 재산을 Department of Social and Health Services(보건사회부, DSHS)와 Health Care Authority(보건국, HCA)에 반제해야 합니다.

재산이란 무엇입니까?

- 사망 당시 수혜자가 소유한 재산 또는 법적인 이권이나 물권 등으로 다음을 들 수 있습니다.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자산과 재산이 포함됩니다.
 - 집, 토지,
 - 은행 계좌,
 - 주식 및 채권,
 - 개인 재산, 및
 - 비검증 재산, 평생 재산.

수혜자의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?

- 사망 당시 수혜자가 소유한 재산 또는 법적인 이권이나 물권 등입니다. 예를 들어 수혜자의 부모, 배우자, 주정부에 등록된 동거녀(남) 또는 자녀의 단독 소유 자산이 있습니다.

재산 회수가 면제되는 재산은 무엇입니까?

- 특정 부족 재산.
 - WAC 182-527-2746 (6)은 아메리칸 인디언 및 알래스카 원주민에게 적용되는 규칙을 설명합니다. 이 규칙은 아메리칸 인디언과 알래스카 원주민들의 소유인 자원과 재산 중 재산 회수가 면제되는 것들을 열거합니다. 이 규칙은 <https://app.leg.wa.gov/WAC/default.aspx?cite=182-527-2746>에서 발표되었습니다.
 - The Northwest Justice Project 는 WashingtonLawHelp.org 에서 “미국 원주민 및 알래스카 원주민 재산 소유자: 재산 회수 면제(Native American and Alaska Native Property Owners: Exemptions from Estate Recovery)”라는 이 규칙을 설명하는 공고를 게시했습니다: <https://www.washingtonlawhelp.org/resource/exemptions-from-estate-recovery-for-property>.
 - 이 규칙 사본을 받기 위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귀하의 DSHS 사례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.
 - 아메리칸 인디언과 알래스카 원주민 재산 회수에 대해 추가 질문이 있다면 재무회수국(Office of Financial Recovery) 800-562-6114 으로 문의하십시오.
- 특정 정부 보상금 및
- 공인 장기 요양 파트너십 정책을 통해 보호된 자산.

사망 시 수혜자에게 아무런 재산이 없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?

- 이 경우 재산회수를 하지 않습니다.

재산회수에 포함되는 의료 및 LTSS 비용은 무엇입니까?

- 55 세 이후 DSHS 나 HCA 에서 지불한 연방 지급 LTSS 비용.
- 연령에 관계 없이 주정부 자금으로 DSHS 에서 지불한 비용, 단 다음은 제외:
 - 성인보호서비스,
 - 발달장애행정국(Developmental Disability Administration)이 승인한 생활보조금(Supplemental security payment),
 - 범죄자 재등록 커뮤니티 안전 프로그램 서비스,
 - 자원봉사자 가사 서비스, 및
 - 보호자 및 후견인 지원 프로그램 서비스.

재산회수에 포함되지 않는 의료 및 LTSS 비용은 무엇입니까?

- 연방정부 메디케어 저축프로그램(Medicare Savings Program)에서 HCA 가 지불한 비용.
- 귀하께서 LTSS 를 받지 않으시는 경우, HCA 가 지급하는 의료비.
- 노인 맞춤 지원(TSOA) 서비스.

재산 회수는 언제 지연됩니까?

- 생존 배우자가 있을 경우,
- 21 세 미만의 자녀가 남아있을 경우,
- 수혜자 사망 시 맹인 또는 장애 자녀가 생존해 있을 경우 또는
- 상속인이 심한 경제적 부담에 따른 지연을 신청하고 DSHS 가 이를 승인한 경우, 심한 경제적 부담이 있는 동안 지연됩니다.

DSHS 에서 심한 경제적 부담(undue hardship)을 승인할 수 있는 경우?

- 재산회수를 할 경우 수혜자 상속인이 자택에서 살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도 살 수 없는 경우,
- 재산이 수혜자의 상속인에게 소득을 산출할 수 있는 유일한 자산인 경우, 또는
- 주 정부에 등록된 생존 동거인일 경우.

요양원(medical facility)에 거주하고 있는 수혜자로서 자택으로 귀가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?

- 이 조치는 “재산 회수”에 해당하지는 않지만, DSHS 는 2005 년 조세평등과 재정책임법(Tax Equity and Fiscal Responsibility Act, TEFRA)에 따라 수혜자의 주택에 사망 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.
- 이 법에 따라 DSHS 는 수혜자의 사망 전에 자택에 유치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- 치료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수혜자만이 자택에 사망 전 유치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.
- DSHS 의 유치권이 설정된 자택을 수혜자가 매각 처분할 경우, DSHS 는 주택매각 수입에서 의료비와 LTSS 비용을 회수합니다.
- DSHS 는 수혜자의 배우자, 주정부에 등록된 동거인 또는 21 세 미만 부양 자녀나 형제가 그 집에 살고 있을 경우 유치권을 제기하지 않습니다.
- DSHS 는 수혜자가 자택에 복귀하면 유치권을 해제합니다.

상세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?

- CLEAR(Coordinated Legal Education, Advice and Referral Line)의 1-888-201-1014 무료전화.
- 유산 계획 및 의료혜택 지원 규정 등을 잘 아는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.
- www.washingtonlawhelp.org 에서 “주에서 지급한 의료 서비스에 따른 재산 회수(Estate Recovery for Medical Services Paid for by the State)”를 읽어주십시오.
- 챕터 RCW 41.05A 와 43.20B, 챕터 182-527 WAC 를 읽어주십시오.
<https://app.leg.wa.gov/WAC/default.aspx?cite=182-527>.
- 재산 회수에 대한 질문은 재무회수국 800-562-6114 로 문의해주시오.